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0나2162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0나216296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4 선고 2019가단11928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12. 23.

판결선고 2022. 1. 20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9가단11928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7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9. 4. 4. 접수 제5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명한, 판사 최희동, 판사 안철범

별지